



'07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환경제도

〈편집부〉

번호	제 목	증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 계 부 서
1	환경마크 및 환경성적 표지 인증대상에 서비스 품목 추가	• 제품 (기기·자재 포함) 이나 재료에 대해서만 인증	• 제품, 재료뿐만 아니라 서비스 품목도 인증대 상에 추가 - 예 : 세탁, 인쇄 등	•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 ('07. 7)	환경부 환경경제과 ☎ (02) 2110-6677
2	환경기술 평가업무 일원화	• 환경기술평가 신청서의 접수·공고, 이해관계 인 의견접수 등은 환경 부에서 수행 • 평가·심의업무는 전문 기관에서 수행	• 신청서의 접수·공고, 이해관계인 의견 접수 및 평가·심의업무 등을 전문기관인 한국환경 기술진흥원으로 일원화	•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5조 ('07. 7)	환경부 환경기술과 ☎ (02) 2110-6728
3	5.5톤이상 경유자동차 정밀검사시 부하검사 적용	• 5.5톤이상 자동차는 무부 하급가속방법 적용 • 검사수수료 : 18,000원 * 5.5톤이하 자동차만 부하검사 적용	• 자동차 정밀검사시 5.5톤 이상 자동차도 부하검사방법 적용	• 대기환경보전법 제37 조의3, 같은법 시행규 칙 별표 25 ('07. 7)	환경부 교통환경 관리과 ☎ (02) 2110-6859
4	배출가스관련부품 결 함 보고 및 시정 제도 시행	〈신 설〉	• 자동차제작자는 배출가 스관련부품의 보증기간 동안 결함시정(보증수 리)을 실시한 경우 결함 시정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• 부품의 결함건수 및 결함 비율이 일정조건에 도달 하면 자발적 내지 강제 적으로 리콜 실시	• 대기환경보전법 제34 조의3,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, 44조 ('07. 7)	환경부 교통환경 기획과 ☎ (02) 2110-6806
5	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	〈신 설〉	• 수도권 대기관리권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 은 연간 배출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을 할당 받고 그 범위 내로 오염 물질을 관리	•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특별법 제14조 내 지 22조('07. 7)	환경부 대기총량 제도과 ☎ (02) 2110-7928
6	사업장 대기배출허용 기준 신설 및 완화	-	• 반도체 제조시설, 생활 폐기물 고형연료제품 (RDF) 또는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(RPF) 등 신규 산업시설 배출허 용기준의 새로이 설정 시행 • 시멘트제품 제조시설의 연화수소, 선박 제조시 설 등의 도장시설 비연 속식 공정에 대한 탄화 수소(THC) 배출허용기 준 완화	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 칙 별표3 및 별표8 ('07. 7)	환경부 대기관리과 ☎ (02) 2110-6789



번호	제 목	증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법규 및 시행일	관 계 부 서
7	4대강 수계 외 지역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4대강 수계 중심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현재 시행중인 4대강 상수원 수계 외 지역까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 시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 ('07. 11) 	환경부 유역총량제도과 ☎ (02) 2110-7642
8	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오수·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오수와 축산폐수를 통합 관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 정책을 반영한 "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"('06. 9제정)의 하위 법령이 제정 완료되어 '07. 9부터 시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('07. 7) 	환경부 수생태보전과 ☎ (02) 2110-6836
9	물놀이 용수 수질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하천의 수질관리가 유기물질(BOD) 중심으로 운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물놀이 용수 수질 관리를 위한 수질평가 및 지침 마련 시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('07. 8) 	환경부 수질정책과 ☎ (02) 2110-6624
10	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비용부담금 부담 및 부과·징수 절차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필요한 비용부담금 부담 및 부과·징수에 대한 사항을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서 규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부담금을 개별법인 「수질환경보전법」으로 이관하여 '07. 7. 4부터 시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 내지49조의7('07. 7) 	환경부 산업수질관리과 ☎ (02) 2110-6844
11	분뇨 수집·운반 업종 통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화조청소업(정화조 분뇨)과 분뇨수집·운반업(수거식 분뇨)을 분뇨수집·운반업으로 구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화조청소업(정화조 분뇨)과 분뇨수집·운반업(수거식 분뇨)을 분뇨수집·운반업으로 통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하수도법 제45조('07. 9) 	환경부 생활하수과 ☎ (02) 2110-6882
12	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제 전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허가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등록제로 전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하수도법 제53조 ('07. 9. 28) 	환경부 생활하수과 ☎ (02) 2110-6882
13	클린주유소 지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기 토양오염도검사 실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클린주유소로 지정받은 경우 15년간 토양오염도 검사 면제 등 인센티브 부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6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('07. 7) 	환경부 토양지하수과 ☎ (02)2110-6774
14	재생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제출	<신 설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, 폐유 등을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 및 폐오일필터를 파쇄·증류하여 고철로 재활용하는 자는 '07. 6. 30 까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[별표 6의2] 제3호바목('07. 7) 	환경부 자원재활용과 ☎ (02) 2110-6954